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학교의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”로, “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”를 “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제3항 각호에 따라 삭제해야 하며, 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”를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: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교육부)
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생략)	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.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---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제3항의 각호에 따라 삭제해야 하며, 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.	③ ----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-----
<신 설>	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: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
1.·2. (생 략)	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